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36
----------	-------

발의연월일 : 2026. 9. 29.

발 의 자 : 정태호 · 이연희 · 김주영
이학영 · 김태년 · 이광재
윤후덕 · 이주희 · 안도걸
정준호 · 이수진 · 김남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단계부터 축하금이나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출생 전 임신 단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임신·출산의 선행 단계인 난임치료의 경우 임신 전부터 치료비 부담이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난임치료비 지원분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출산 및 난임치료

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머목 중 “출산”을 “난임치료, 출산”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를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목에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연 300만원 이내의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3. ----- -----
가. ~ 러. (생 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u>출산</u> 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 급받는 다음의 급여	며. ----- <u>난임치료, 출산</u> ----- ----- -----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과 관련하여 <u>자녀의 출 생일 이후 2년 이내에</u>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 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1) ----- ----- ----- ----- <u>자녀의 임</u> <u>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u> <u>년까지의 기간 중</u> ----- ----- ----- -----

대하여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 ----- ----- ----- -----
2) (생략) <u><신설></u>	2) (현행과 같음) 3) <u>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연 300만원 이내의 금액</u>
버. ~ 처. (생략) 4.·5. (생략)	버. ~ 처.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